

	<b>규정</b> <b>자체평가 규정</b>	문서번호	TWP-A702
		제정일자	2010. 03. 01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9
		페이지	1/5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2010. 03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담당	교무학생처장	산학임학처장		사무처장	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2
		제정일자	2010. 03. 01.
자체평가 규정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9
		페이지	2/5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2
		제정일자	2010. 03. 01.
	자체평가 규정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9
		페이지	3/5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”이라 한다)의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점검 및 평가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, 그 결과를 대학 발전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“자체평가”는 객관성, 공정성, 신뢰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, 조직운영,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, 분석,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평가영역)** ① 평가영역은 대학발전계획 수립, 평가, 기관평가인증, 대학정보공시 내용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경영 및 성과
2.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
3. 교직원
4. 학생지원 및 시설
5. 산학 및 지역사회 협력
6. 기타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한 영역

②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평가점수 산출기준, 평가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부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**제4조(평가시기)**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,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대신 할 수 있다.

**제5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**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,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.

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 및 교육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**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** ① 자체평가의 객관성, 공정성,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2
	자체평가 규정	제정일자	2010. 03. 01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9
		페이지	4/5
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
  - 2. 자체평가 심사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- 3.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 환경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⑥ 간사는 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.

**제7조(주관부서)** 주관부서는 기획예산처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체평가의 기획, 운영, 조정,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
- 2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
- 3. 자체평가 역량 향상

**제8조(자체평가실무위원회)** ① 자체평가의 신뢰성 및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산하 자체평가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평가지표 개발 및 점검
  - 2.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  - 3. 평가지표 결과 분석(품질 미흡에 대한 원인 파악, 개선 계획 등)
- ④ 간사는 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,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
**제10조(평가계획 수립)** 주관부서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.

**제11조(평가자료 제출)**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행정부서 및 학과는 평가자료를 제출한다. 주관부서는 평가자료를 수합하여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.

**제12조(평가자료 검증)** 실무위원회는 부서 및 학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며, 필요한 경우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2
		제정일자	2010. 03. 01.
	자체평가 규정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9
		페이지	5/5

실사할 수 있다.

**제13조(자체평가 결과 보고서)** 실무위원회는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검증된 평가자료를 토대로 적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.

**제14조(자체평가 심사)** 평가위원회는 항목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**제15조(자체평가 결과 보고)**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16조(평가결과 통보 및 공시)** 주관부서는 평가 종료 후 부서 및 학과에 결과를 통지하고,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
**제17조(평가결과의 활용)**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, 특성화계획 및 교육·행정 체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부서 및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행·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.

**제18조(경비)** 자체평가를 위한 위원회 회의 경비는 대학 예산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9조(기타)** 기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